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548
----------	-----

제출년월일 : 2026. 2. 27.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체육진흥기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체육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여 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한 평창군 체육발전 도모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목표액 초과 달성에 따라 평창군 옥외광고 발전을 위한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기금명	계획액	기정계획액	비교증감
합계(9개 기금)	34,681,886	34,570,119	111,767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3,000	83,000	0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4,190,749	14,190,749	0
평창군자활기금	544,973	544,973	0
평창군고향사랑기금	1,450,407	1,450,407	0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454,867	2,342,426	112,441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274,358	275,032	△674
평창군재난관리기금	2,266,336	2,266,336	0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34,637	134,637	0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3,282,559	13,282,559	0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